

상 세 규 격 서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1	엔드밀(HSS)	4F3.0x10x55xS6 (E2412030)	EA	20
2	엔드밀(HSS)	4F4.0x12x60xS8 (E2412040)	EA	20
3	엔드밀(HSS)	4F5.0x15x65xS8 (E2412050)	EA	20
4	엔드밀(HSS)	4F6.0x15x65xS8 (E2412060)	EA	20
5	엔드밀(HSS)	4F7.0x20x75xS10 (E2412070)	EA	20
6	엔드밀(HSS)	4F8.0x20x75xS10(E2412080)	EA	20
7	엔드밀(HSS)	4F9.0x25x80xS10 (E2412090)	EA	20
8	엔드밀(HSS)	4F10.0x25x80xS10 (E2412100)	EA	20
9	엔드밀(HSS)	4F11.0x30x90xS12 (E2412110)	EA	20
10	엔드밀(HSS)	4F12.0x30x90xS12 (E2412120)	EA	20
11	엔드밀(HSS)	4F16.0x40x105xS16 (E2412160)	EA	20
12	엔드밀(HSS)	4F18.0x40x105S16 (E2412180)	EA	20
13	엔드밀(HSS)	4F20.0x45x115xS20 (E2412200)	EA	20
14	초경 광광드릴	7.9x46x79xS8(DPPA01079	EA	5
15	초경 광광드릴	9.9x53x89xS10(DPPA01099)	EA	5
16	초경 광광드릴	11.9x62x102xS12(DPPA01119)	EA	5
17	초경 광광드릴	6.9x42x74xS7(DPPA01069)	EA	5
18	초경 광광드릴	8.7x50x84xS9(DPPA01087)	EA	5
19	초경 광광드릴	10.5x55x95xS11(DPPA01105)	EA	5
20	초경 광광드릴	12.2x62x102xS13(DPPA01122)	EA	5
21	초경 광광드릴	14.2x67x111xS15(DPPA01142)	EA	5
22	EX-스파이럴탭(비호모)	M8.0x1.25	EA	10
23	EX-스파이럴탭(비호모)	M10.0x1.5	EA	10
24	EX-스파이럴탭(비호모)	M12.0x1.75	EA	10
25	EX-포인트탭(비호모)	M8.0x1.25	EA	10
26	EX-포인트탭(비호모)	M10.0x1.5	EA	10
27	EX-포인트탭(비호모)	M12.0x1.75	EA	10
28	EX-포인트탭(비호모)	M10.0x1.5	EA	10
29	EX-포인트탭(비호모)	M12.0x1.75	EA	10
30	초경 챔퍼밀(90도)	6.0xF6xL60xS6(E5E18060)	EA	10
31	파워바이스(표준형) (전면TAP)	PCV-200 (PCV-200-320)	EA	1
32	밀링척(이면구속)	BTT50-C32-105	EA	15
33	밀링척(이면구속)	BTT50-C32-135	EA	15
34	NC드릴척(이면구속)	CBT50-NPU13-105	EA	15
35	NC드릴척(이면구속)	CBT50-NPU13-130	EA	13
36	ER콜렛척(볼베아링)이면구속	BTT50-ER32-135B	EA	10
37	SANDVIK CAPTO ER CHUCK	C6-391.14-16-100	EA	1
38	SANDVIK CAPTO ER CHUCK	C6-391.14-25-100	EA	1
39	SANDVIK CAPTO ER CHUCK	C6-391.14-32-100	EA	1
40	진영 탭핑척	BT50-TCH36-240	EA	2
41	상진 탭콜렛	STC3-16	EA	1

42	NIKKEN 탭핑척	BT50-Z65-160	EA	1
43	NIKKEN 탭콜렛트	ZKN65-42	EA	1

상 세 내 역

1. 물품명

-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지원을 위한 DX기반구축사업” 도입장비인 수직형 머시닝센터 용 챔퍼밀, 스파이럴탭 등 재료

2. 성능 및 규격

- 엔드밀, 스파이럴탭 등 총 13종 43품목 부품으로서 납품 규격관련은 상기 규격표 참조

3. 기타사항

가.납품위치: 경북 구미시 공단동 324-1, 101호

나.납품개요: 규격서의 조건에 맞는 제품 납품

다.납품기한: 계약후 20일이내

라.무상보증기간: 납품 및 검수후1년

마.계약의이행

- 1) 본 규격서에 대한 주계약자(이하 “계약자” 라한다)와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규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계약법 등의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 2)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3)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정상운영 및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특성에 대해 계약자의 오인 또는 누락된 상태로 계약 체결되어, 계약 후 이를 보완하기위한 설계변경, 물품 등을 추가해야 할 경우 계약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5) 계약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성능, 품질 등 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